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8. 27.(일) 12:00 (2023. 8. 28.(월) 조간)

#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

- 심폐소생술(CPR)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(AED) 비용 인정
- 스마트 안전장비의 인정 품목 및 구매·임대 사용 한도 확대
- 공사종류 개편으로 건설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

**고용노동부**(장관 이정식)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**사용기준 현실화** 등을 위해 「**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**」(고용노동부 고시)을 **일부 개정**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* (행정예고) '23. 8. 28.~9. 7. (시행일) '24. 1. 1.(단, 공사종류 개편 사항은 '24. 7. 1.부터 시행)

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**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도급인**(시공사)**에게 지급**하는 비용으로(공사금액의 2~3% 내외) 안전모·안전화 등 **보호구**, 난간·덮개 등 **안전시설** 등에 사용할 수 있다(붙임1).

이번 고시 개정은 「**중대재해 감축 로드맵**」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'**자기규율 예방체계**'를 구축·이행하는 과정에서 **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품목**을 **현장 여건에 맞게 갖추도록 지원**하기 위해 이루어졌다.

먼저, ①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**심폐소생술(CPR) 교육비**와 **자동심장충격기(AED) 구입비**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, ② 최근 산업계에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(ICT) 기반의 안전장비를 개발 중임을 고려, **인공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(AI CCTV)**,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**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**를 현행 **구입·임대비의 20%에서 40%로 확대**했다.

또한,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용하는 '**공사종류**'가 **건설 관계 법령과 상이하여 불편**하다는 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하여, 「건설산업기본법」을 기초로 하여 **분류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편**하였다(붙임3).

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"이번 고시 개정이 현장의 **응급상황 초동대처 시스템 구축, 스마트 안전장비 확산 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**"라고 말하고, "앞으로도 **전문가, 건설업계, 안전산업계**의 **의견을 수렴**하여,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의 현장 적합성을 높여 나가겠다"라고 밝혔다.

☞ 일부개정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입법·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

붙임1: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요

붙임2: 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」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

붙임3: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및 공사종류 분류표

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 부서 | 산재예방감독정책관<br>건설산재예방정책과 | 책임자 | 과 장 | 박상원 (044-202-8935) |
| | | 담당자 | 사 무 관 | 이덕원 (044-202-8938) |
| | | | 전문위원 | 류채은 (044-202-8942) |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## 붙임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요

□ 개 요

○ (**개 념**) 건설현장 **산업재해 예방**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건설**공사 발주자가** 공사금액에 **계상**하여 **시공자에게 지급**하는 비용

○ (**적용범위**) 총공사금액 **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**

○ (**계상기준**) **예정가격*** 작성 시 **건설공사 발주자**가 **공사종류 및 금액**에 따라 **대상액**(재료비+직접노무비)의 **2~3% 내외**로 **계상****

* 저가낙찰에 따른 산재 위험을 고려, 낙찰가에서 예정가격으로 변경(`20년 이후)
** 공사종류별 계상기준 하한액은 붙임3 참고

□ 관리 및 제재

○ (**관 리**) **건설공사 도급인**은 **매월 사용명세서를 작성**하여야 하며 (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), **6개월**마다 **발주자**의 **확인**을 받아야 함

* 건설공사도급인은 관계수급인에게 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음

- 발주자는 **목적 외 사용**하거나 **미사용**한 **안전보건관리비**에 대하여 **감액조정**하거나 **반환**을 **요구**할 수 있음

○ (**제 재**) **미계상 및 부족계상**(발주자), **목적 외 사용** 및 **사용내역서 미작성·미보존**(도급인) 시 **1,000만원 이하**의 **과태료** 부과

□ 사용기준

○ **목적 외로 사용**할 경우 안전시설 설치, 개인보호구 지급 등 안전조치 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**사용기준을 제한**

○ 원칙적으로 **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목적**으로만 사용 가능

- **공사도급내역서에 반영**되어 있거나, **他법령에서 의무사항**으로 규정한 항목은 **사용 불가**

## 붙임 2 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」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

### ① CPR(심폐소생술) 교육비: 신설

- 인명사고 초기대응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 등 **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** 허용

### ② AED(자동심장충격기) 구입비: 확대

- 심정지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AED(자동심장충격기)를 구비하는데 필요한 비용 허용*

* 단, 응급의료법에 따라 현재도 AED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현장(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현장)은 제한적으로 허용

### ③ 스마트 안전시설·장비: 확대

- 스마트 안전시설·장비 **구입·임대비 사용 한도 확대**(20%→40%)

* 단, 해당 공사현장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0% 이내

-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외에 **고용부 고시*에 따라 지원하는 품목도 사용가능**토록 확대

* 「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」(고용노동부 고시) 제2조제12호에 따른 "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"에 해당되는 품목

### ④ 공사종류 재분류: 전면개편

- 「건설산업기본법」 등 건설 관련법령을 기초로 하여 ▲**건축공사**, ▲**토목공사**, ▲**중건설공사**, ▲**특수건설공**사로 전면 재분류

- 공사특성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 적용

**붙임 3** **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및 공사종류 분류표(개정안)**

## □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

| 구분 / 공사종류 |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(%) |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| |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(%) |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(%)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적용 비율(%) | 기초액 | | |
| 건축공사 | 2.93% | 1.86% | 5,349,000원 | 1.97% | 2.15% |
| 토목공사 | 3.09% | 1.99% | 5,499,000원 | 2.10% | 2.29% |
| 중건설공사 | 3.43% | 2.35% | 5,400,000원 | 2.44% | 2.66% |
| 특수건설공사 | 1.85% | 1.20% | 3,250,000원 | 1.27% | 1.38% |

## □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

| 공사종류 | 내용 예시 |
|---|---|
| 1. 건축공사 | 가.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(별표 1) 제1호 '나'목 종합적인 계획,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 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(또는 벽)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<br>나.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(별표 1)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·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|

| 공사종류 | 내 용 예 시 |
|---|---|
| 2. 토목공사 | 가.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(별표 1) 제1호 '가'목 종합적인 계획·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·개량하는 공사, '라'목 종합적인 계획,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, 환경오염을 예방·제거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, 에너지 등의 생산·저장·공급시설 등의 건설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<br><br>나.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(별표 1)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같은 표 제1호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·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|
| 3. 중건설공사 | □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(별표 1) 제1호 '가'목 및 '라'목에 해당 되는 공사 중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<br><br>가. 고제방 댐 공사 등<br><br>댐 신설공사,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<br><br>나. 화력, 수력, 원자력,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<br><br>화력, 수력, 원자력,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<br><br>다. 터널신설공사 등<br><br>도로, 철도,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, 교량,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터널 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|

| 공사종류 | 내 용 예 시 |
| --- | --- |
| 4. 특수건설공사 | □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(별표 1) 제1호 '마'목 종합적인 계획·관리 및 조정에 따라 수목원, 공원, 녹지,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·개량 등의 건설공사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(별표 3)에서 구분한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와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·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<br>가. 「전기공사업법」에 의한 공사<br>나.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에 의한 공사<br>다. 「소방공사업법」에 의한 공사<br>라. 「문화재수리공사업법」에 의한 공사 |
| 비고<br>1.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,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한다.<br>2. 건축공사,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한다. | |